

파주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4
----------	-----

제출년월일 : 2002. 1. 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수도요금 누진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누어지고 있어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누진체제로 개선하고 요금부과 업종간 통·폐합과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채납된 수도요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가산금을 “채납액의 100분의 5” 를 “채납액의 100분의 3” 으로 하향 조정(안 제36조)
- 나.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체제를 현 6단계에서 3단계로, 욕탕 1·2종을 대중목욕탕용으로 조정 (안 제27조 별표2)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는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조정 (안 제27조 별표3)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채납액의 100분의 5”를 “채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 · 과 · 소		상하수도과(☎940-4808)
입 안 자	상하수도과장	김 홍 식
	수도행정담당	최 영 호
	담 당 자	정 정 선

[별 표 2]

업 종 별 요 금 표

구 분 업 종	사 용 량 (단위 : 톤)	톤당단가 (단위 : 원)	비 고
가 정 용	0 ~ 20이하	330	
	20초과 ~ 30이하	420	
	30초과	610	
업 무 용	0 ~ 20	650	
	21 ~ 50	700	
	51 ~ 100	810	
	101 ~ 300	850	
	301이상	900	
영 업 용	0 ~ 30	700	
	31 ~ 50	750	
	51 ~ 100	830	
	101이상	1,000	
대중목욕탕용	0 ~ 500이하	480	
	500초과 ~ 1,000이하	620	
	1,000초과 ~ 2,000이하	670	
	2,000초과	720	

업 종 별 구 분 표

업 종	구 분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업 무 용	1.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 3.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영 업 용	1. 식품백화점,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노래방, 2.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음식점,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블록제조업, 도축장, 제빙냉동, 청량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기타 유사업종등 3. 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4.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5.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6.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대중목욕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u>채납액의 100분의 5</u>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가산금) ----- ----- ----- <u>채납액의 100분의 3</u> 에 ----- ----- -----.				
[별표2] 업종별요금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원)	비고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원)	비고	
가정용	0~10	300		가정용	0~20이하	330		
	11~20	350			21초과~30이하	420		
	21~30	420			30초과	610		
	31~40	530			업무용	(현행과 같음)		
	41~50	630		영업용	(현행과 같음)			
	51이상	700		대중목욕탕용	0~500이하	480		
업무용	(생략)		500초과~1,000이하		620			
영업용	(생략)		1,000초과~2,000이하		670			
욕탕1종	0~200	430			2,000초과	720		
	201~300	500						
	301~500	570						
	501이상	660						
욕탕2종	0~200	1,000		[별표3] 업종별구분표				
	201~500	1,100		가정용	1.~2.	(현행과 같음)		
	501~1,000	1,300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1,001이상	2,000						
[별표3] 업종별구분표				[별표3] 업종별구분표				
가정용	1.~2.	(생략) (신설)		가정용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업무용	1.~2. (생략) 3.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재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u>정당, 원호단체,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 새마을금고</u> ,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업무용	1.~2. (현행과 같음) 3.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재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u>정당, 새마을금고</u> ,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영업용	(생략)	영업용	(현행과 같음)
욕탕용	1종	대중목욕탕업	일반대중 목욕장업
	2종		
	1. <u>공중위생법에 의한 공동탕업, 가족탕업</u> 2. <u>공중위생법에 의한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업(욕탕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욕탕업)</u>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수도요금 누진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누어지고 있어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누진체제로 개선하여 요금부과 업종간 통·폐합과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 효율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5"를 "체납액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안 제35조)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체계를 현 6단계에서 3단계로 욕탕 1·2종을 대중 목욕탕으로 조정(안 제27조, 별표 2)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는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조정(안 제27조 별표 3)

□ 검토내용

- 금번 파주시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은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욕탕 1·2종 8단계를 대중 목욕탕 4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자 단체는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5"를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따른 것으로 현행 가정용의 누진 구간이 10-20-30-40-50m³/월 단위로 구분되고 있으나 평균 사용량이 20~25m³/월이고, 30m³/월 이상 사용 수용가가 극소수 인점을 감안 할 때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료되고
- 가산금의 하향조정(체납액의 100분의 5⇒체납액의 100분의 3)은 소비자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건의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개선 사항으로 전기·전화 등에 대한 가산금 1.5~2.5%와 비교하여 타당한 조치로 보아지며
-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요금 인상요인이 0.1% 발생되고 있으나 연간 징수액 87억 5,884만원과 대비 지극히 미미한 금액(88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파주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절차상이나 법적 타당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